

12.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 幼稚促進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7-90호 1997. 9. 30

주요 골자

- 가. 민간부문이 민자유치사업을 제안할 경우 민간부문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, 주무관청은 3월이내에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할 경우 민간부문은 제안내용을 사업계획에서 포함시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, 한국산업은행, 장기신용은행,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함.

개정 이유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간 제안제도가 개선되고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이 허용되는 등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·공포('97. 8. 28.)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절차를 규정하고자 함.